

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 :

○ 제출 일자 : 1994년 9월 17일

○ 회 부 일 자 : 1994년 9월 17일

다. 상 정 일 자 : 제106회 충청북도 임시회

○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(1994. 9. 27)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교육청 의사국장 이 근 수)

가. 제 안 이 유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(대통령령 제14,317호 '94. 7. 6)으로 지방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, 동시행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 요 골 자

○ 국내여비 구분중 식탁료 삭제 (안 제5조제1항)

○ 일비 지급기준 조정 (안 제6조)

- 일비 (1인당) : 50,000원 → 60,000원

○ 국내여비 지급기준 조정 (안 별표 1)

- 현지교통비 (1일당) : 4,500원 또는 5,000원 → 6,500원
- 숙박비 (1야당) : 15,500원 또는 17,000원 → 20,700원
- 식비 (1일당) : 9,500원 또는 11,000원 → 11,000원
- 식탁료 (1야당) : 800원 → 식탁료 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

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(대통령령 제14,317호 '94. 7. 6)으로 지방의회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동시행령을 준용토록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일비 및 여비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 없음 "

5. 토 론 요 지 : " 없음 "

6. 심 사 결 과 : " 원안 가결 "

7.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

가.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